

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○ 제 안 자 : 이 광 회 의원의 5인

○ 제안일자 : 2003년 5월 12일

○ 근거법령 :

이천시정원관리기관별보좌·보조기관에두는직급별정원배정규정

○ 검토내용 :

1. 제안이유

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직렬이 이천시 정원 배정관련 규정과 불부합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렬을 현행 “지방행정사무관” 단수에서 “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”의 3복수로 개정함(안 제3조).

3. 검토의견

이천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업무소관이 산업복지국, 건설도시국, 농업기술센터, 상수도사업소, 공원관리사업소 등 사업부서로 지정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직렬 단수가 아닌 행정+농업+토목의 3복수로 사업부서 전문직렬로 변경하여도 의안검토·보고등 의정업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